

노회록검사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노회록검사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위원회는 총회 산하 전 노회의 노회록 검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이 위원회의 위원은 여성 1인 이상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하되, 헌법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한다.

제4조 (임기)

이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조로 한다.

제5조 (임원)

이 위원회 임원은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으로 한다.

제6조 (임무)

이 위원회는 총회 산하 모든 노회의 노회록을 검사 원칙에 따라 매년 6월에 검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1. 경과 사건을 사실대로 기록한 여부
2. 처리한 사건을 교회 헌법에 의하여 처리한 여부(서식, 절차 등)
3. 사실을 지혜롭고 공평하며 덕을 세우게 처리한 여부

제7조 (회의)

이 위원회는 총회 후 첫 번째 회의를 정기회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개정)

이 규정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가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제정
2021년 9월 제106회 총회 개정